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기죄의 법정형 강화〉

■ 인요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19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인요한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9. 13.
3. 회 부 일: 2024. 9. 19.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안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및 제348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준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임(안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제348조).

현행	개정안
第347條(詐欺) ① 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の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347條(詐欺) ① ----- ----- ----- -----4천만원-----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 ----- ----- ----- -----4천만원----- -----.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제348조(준사기) ① -----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 ----- ----- ----- ---- <u>4천만원</u> ----- -----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르면 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②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③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바,¹⁾ 각 범죄는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의 피해액과 상당수의 피해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1953년 「형법」 제정 시의 법정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온 점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어 왔음.²⁾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할 경우에도 해당 범죄가 성립함.

2) 한국일보 사설, “청년 4명 숨졌는데 15년형, 판사도 지적한 전세사기 형량”, 2024. 2. 9., 최종검색일: 2025. 1. 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815020004691>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단위 : 억원, 명, %, %p)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대비 증감률
피해금액	6,720	2,353	1,682	1,451	1,965	(35.4)
환급액	1,915	1,141	603	379	652	(72.0)
환급률	28.5	48.5	35.9	26.1	33.2	(7.1)
피해자수	50,372	18,265	13,213	12,816	11,503	(△10.2)

※ 자료 : 금융감독원,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연도별 전세사기 현황]

구분	2021 (2~6월/8~10월)	2022 (7.25.~12.31.)	2023 (1.1.~7.16.)
검거건수(건)	187	387	862
검거인원(명)	243	884	2,582
피해인원(명)	428	532	4,481
피해금액(억원)	—	903	5,105

※ 자료 : 경찰청 제출자료

또한 1995년 당시 「형법」 개정을 통하여 벌금형의 기준이 되는 화폐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개정하였는바,³⁾ 2024년 기준 1995년에 비해 2.2배의 물가가 상승하였음에도⁴⁾ 동일한 벌금형이 적용되는 것은 처벌 수위가 실제적으로는 약화되었음을 의미함.

3) 개정 이전 형법 [시행 1988. 12. 31] [법률 제4040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995년(기준시점)의 2천만원은 2024년(비교시점)으로 환산시 약 4,392만원에 해당함(출처: 통계청, 화폐가치 계산)

이에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 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형벌체계의 균형을 이루고 사기범죄를 예방 또는 억제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변동없이 유지되어 온 것과 달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⁵⁾ 「보험사기방지 특별법」⁶⁾ 등 형사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수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해온 점을 고려하여,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 강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 8. 12. 제133차 전체회의를 통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의결하였는바, 일반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을 '5~9년', 가중영역을 '6~11년'으로, △300억 원 이상은 기본 영역을 '6~11년'으로, 가중영역을 '8~17년'으로 수정하였으며,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을 '6~11년', 가중영역을 '8~17년'으로, △300억 원 이상의 경우 기본 영역을 '8~15년'으로, 가중영역을 '11년 이상, 무기'로 선고하도록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2014. 1. 28. 신설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2023. 5. 16. 개정을 통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였음.

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2016. 3. 29. 제정 당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2024. 2. 13.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권고 형량을 강화하였음.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1.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6월~1년 6월	1년~2년 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2년 6월	1년~4년	2년 6월~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6월~4년	3년~6년	4년~ ~~7년~~ 8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6년	5년~ ~~8년~~ 9년	6년~ ~~9년~~ 11년
5	300억 원 이상	5년~9년	6년~ ~~10년~~ 11년	8년~ ~~13년~~ 17년
2.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2년 6월	1년 6월~3년	2년 6월~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 6월~3년	2년~5년	4년~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5년	4년~7년	6년~ ~~9년~~ 11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7년	6년~ ~~9년~~ 11년	8년~ ~~11년~~ 17년
5	300억 원 이상	6년~10년	8년~ ~~13년~~ 15년	11년이상, 무기

※ 자료 : 양형위원회(2024. 8. 12.) 제133차 회의 결과

문 의 처

02)6788-5053